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40호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5 4 5 호 일반계약제공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 공	고 제 1 5 4 6 호 일반계약제공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3
○ 공	고 제 1 5 4 8 호 공인 폐기 공고	4
○ 공	고 제 1 5 5 2 호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5
○ 공	고 제 1 5 5 6 호 2018년 10월 취득세 공시송달	9
○ 공	고 제 1 5 6 3 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논현중앙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수정)	11
○ 공	고 제 1 5 6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공	고 제 1 5 6 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래구역 소3-10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33
○ 공	고 제 1 5 6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
○ 보 건 소 공 고 제 9 2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41

고 시

○ 고	시 제 1 0 8 호 2017회계연도 결산 고시	43
○ 고	시 제 1 0 9 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공고 및 게재	48
○ 고	시 제 1 1 0 호 상인천초교주변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51
○ 고	시 제 1 1 1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66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45호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를 위반한 일반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8년10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10.02. ~ 2018.10.31. (30일간)

2. 공고내용

업 종 (등록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비 고 (처분확정일자)
일반 게임제공업 (2017-5)	일방 성인 게임랜드	홍 * 선	남동대로921번길 15, 201호 (간석동)	• 사행행위(환전) 1차	등록취소	2018.10.02.

3. 행정처분 법적근거

-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4. 영업의 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향후 1년간 동일 업종 영업제한(대표자, 영업소)

5. 기타사항

- ①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③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032-453-2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46호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를 위반한 일반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8년10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10.02. ~ 2018.10.31. (30일간)
2. 공고내용

업 종 (등록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비 고 (처분확정일자)
일반게임제공업 (2015-9)	현대 게임랜드	김*조	남동대로 924, 1층 11호 (간석동)	• 사행행위(환전) 1차	등록취소	2018.10.02.

3. 행정처분 법적근거

-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4. 영업의 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향후 1년간 동일 업종 영업제한(대표자, 영업소)

5. 기타사항

- ①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③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032-453-2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48호

공인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규정에 의한 공인에 대하여 제10조(공고)에 따라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10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공인 폐기(사고)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직인 분실(기계內 없음)
- 공인 폐기일 : 2018. 10. 2.
- 폐기 공인 수 : 1개
- 폐기 공인명 [간석2동] : 1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cm)	비 고
폐 기 (사고)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간석2동통합민원1)		한글전서체 2.4cm×2.4cm	통합증명 발급기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52호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남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10월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남동구청장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5-6번지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8. 10. 5. ~ 2018. 10. 19.(14일간)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2683]
6.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등의 표시
7.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에 비치·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토지)

사업명 :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자	
	동명	지 번	지목		면적(㎡)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재결신청	성 명 (지분율)	주 소	성 명	주 소
1	만수동	895-6	대	대	60.076	60.076	60.076	**은행 [(구)서울**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지장물)

사업명 :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표시					소유자		관계자	
	동명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재결신청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주소
1	만수동 895-6	공동주택	시멘트벽돌조	56.198㎡	56.198㎡	**은행 [(구)서울**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지하실	6.611㎡	6.611㎡				

의 건 서		
신 청 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의견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8-1556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 김**보 외 11건

주소 또는 거소 : 내역참조

서 류 의 명 칭 : 2018년 7월 독촉 및 18년 9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 2018년 7월 독촉 및 18년 9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8.9.30.을 2018.10.31.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10월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취득세 2018년 9월 수시분 및 2018년 7월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단위: 원)

연번	세목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자 주소	납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취득세	김**보	5712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74-2, B01호 (만수동,강남맨션110-1동)	101501 2018 07 2 570 038516	수취인미거주	332,680
2	취득세	김**중	64092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4길 17-1 (봉명동)	101501 2018 07 2 570 038519	수취인미거주	332,650
3	취득세	김**중	6705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70-1, 110동 B01호 (만수동,강남빌라)	101501 2018 07 2 570 038520	수취인미거주	332,630
4	취득세	이**주	93102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47-2, B동 B01호 (도림동,덕수빌라)	101501 2018 07 2 660 038766	수취인미거주	401,540
5	취득세	김**호	631227-*****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3길 50, 피카소 102호 (두류동)	101501 2018 09 2 570 050827	수취인미거주	341,530
6	취득세	한**익	8602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5, B동 1709호 (정자동,정자동3차푸르지오시티)	101501 2018 09 2 650 050875	수취인미거주	3,382,600
7	취득세	이**은	7112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46번길 34, 703호 (송의동,말레니움)	101501 2018 09 2 660 050931	수취인미거주	3,149,78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63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논현중앙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수정)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논현중앙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10월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논현중앙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율 (%)		면적(㎡)	시설율 (%)	
변경	논현중앙 근린공원	근린 공원	논현동 611-7 일원	60,073.5	12,868.6	21.42	60,073.5	12,897.6	21.47	■ 조경시설 (잔디밭) ⇒3,046.2㎡ 감 ■ 운동시설 ⇒ 262.7㎡ 감 ■ 녹지시설 ⇒ 29.0㎡ 감 ■ 기반시설 (광장) ⇒ 100.6㎡ 감 ■ 휴양시설 (쉼터) ⇒ 241.5㎡ 증 ■ 교양시설 (도서관) ⇒ 1,432.3㎡ 증 ■ 편의시설 (주차장) ⇒ 863.4㎡ 증 ■ 유희시설 (놀이터) ⇒ 344.7㎡ 증 ■ 기반시설 (도로) ⇒ 556.6㎡ 증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논현 중앙 근린 공원	☐ 시설율(녹지율) 변경 •기정 : 21.42%(78.58%) •변경21.47%(78.53%) ☐ 세부 변경사항 •조경시설(잔디밭) ⇒ 3,046.2㎡ 감 •운동시설 ⇒ 262.7㎡ 감 •녹지시설 ⇒ 29.0㎡ 감 •기반시설(광장) ⇒ 100.6㎡ 감 •휴양시설(쉼터) ⇒ 241.5㎡ 증 •교양시설(도서관) ⇒ 1,432.3㎡ 증 •편익시설(주차장) ⇒ 863.4㎡ 증 •유희시설(놀이터) ⇒ 344.7㎡ 증 •기반시설(도로) ⇒ 556.6㎡ 증	■ 근린공원의 기존 잔디밭에 개방형의 자연친화적인 제로 에너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 여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문화 활동 욕구충족 및 평생 교육 증진에 기여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 논현중앙근린공원(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1-7 일원)
 (시설율 : 21.47% / 녹지율 : 78.53%)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증·감)
	부지(㎡)	구성비(%)	부지(㎡)	구성비(%)	
총계	60,073.5	100	60,073.5	100	
기반시설	5,020.3	8.36	5,476.3	9.12	
도로	3,451	5.75	4,007.6	6.67	증 556.6㎡
광장	1,569.3	2.61	1,468.7	2.44	감 100.6㎡
조경시설	6,533.5	10.88	3,487.3	5.81	감 3,046.2㎡ (잔디밭)
휴양시설	-	-	241.5	0.40	증 241.5㎡ (쉼터)
운동시설	1,281.9	2.13	1,019.2	1.70	감 262.7㎡ (근린체육)
교양시설	-	-	1,432.3	2.38	증 1,432.3㎡ (도서관)
편익시설	32.9	0.05	896.3	1.49	증 863.4㎡ (주차장)
유희시설	-	-	344.7	0.57	증 344.7㎡ (놀이터)
녹지	47,204.9	78.58	47,175.9	78.53	감 29.0㎡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평생교육과(☎453-643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5. 기타

○ 열람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10월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현재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어려워 별도로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대행계약기간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6조제2항 단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기간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現 제12조제2항제1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청소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453-2550,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현재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어려워 별도로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대행계약기간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6조제2항 단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기간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現 제12조제2항제1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본 문

☐ 신·구조문대비표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공사장”을 “공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을 “다만,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5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6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3 중 “제6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6조의2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폐기물에 대하여는”을 “폐기물은”으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별표5, 별표6,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5]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6조제2항 관련)

1.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등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 가능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6]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6조제2항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0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0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처리업소 인계 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구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1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 반 자	③ 상 호		④ 허가번호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 차량번호		⑦ 운반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기물종류		⑩ 위 탁 량	kg
처 리 자	⑪ 상 호		⑫ 허가(신고)번호	
	⑬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⑭ 시 설 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⑯ 처리방법		⑰ 반 입 량	kg
⑱ 확인	운 반 자		처 리 업 소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⑯, ⑰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일련 번호	반 입 내 역								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								보관량 (kg)	처리자 확 인	비고
	반입일자	배출자	배출장소	수집운반업 소명	수집운반차 량번호	폐기물 종 류	반 입 량(kg)		운반자 확 인	인계서 번호	운반 일자	처리 업소명	처리업소 소재지	업종	운반·인계량(kg)				
							당일(kg)	누계(kg)							당일(kg)	누계(kg)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일련 번호	배 출 자				수집운반 내역						처 리 내 역				비 고
	성 명 (상 호)	배출장소	폐기물종류	발생량 (kg)	운반일자	업 소 명	차량번호	운반량 (kg)	운반자 확 인	처리업소 확 인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량 (kg)	처리자 확 인	

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의3(생활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분야)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분야는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확보기준 그리고 위탁 대행료의 직접노무비 지급현황 등 위탁사업 전반에 한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

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5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6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생활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분야) 제6조의2에 따른 --

----- 한
정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

----- 대해서-----

도록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생 략)

② 제1항의 대행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생 략)

3. (생 략)

③ (생 략)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폐기물은 -----

----- 자에게 -----

-----.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해서-----

있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청소과장 엄학섭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 련 법 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 당 없 음”
관 련 자 료	“해 당 없 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① 삭제 <2013. 12. 13.>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⑤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12. 1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8-1567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래구역 소3-10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8-106호(2018. 9. 28.)로 실시계획(정정 및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래구역 소3-10호선】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10월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래구역 소3-10호선)
 - 명 칭: 소래지구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소로3-10호선: B=6.0m, L=104.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공사완료일: 2018. 9. 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15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10월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당연 적용됨에 따라 단순 준용 규정은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규정 삭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보건행정과)
/ 453-5071, FAX 453-507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당연 적용됨에 따라 단순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규정 삭제(안 제4조)

☐ 본 문

☐ 참고자료

-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행정안전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준용규정)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u>	<u><삭 제></u>

[참고자료]

□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128(2018. 5. 17.)]

1. 현황 및 문제점

- 이의신청 등 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 규제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면 법적효력 없는 재기재에 불과하고, 다르게 규정한다면 규제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임

2. 개선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

- 자치입법권 존중 및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정비대상을 삭제·폐지 대신 상위법령과 동일한 문언으로 개정할 수도 있으나,
 - 상위법령을 그대로 기재해두는 것은 제정실익 등이 없다는 점에서 가급적 삭제 또는 폐지하여 정비하도록 함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자치법규나 서식, 행정규칙이 많아 모든 대상을 확인하여 정비안을 제시하기 어려운바,
 - 지자체가 스스로 서식 등에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상위법령 등의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한 자치법규 규정이 많은데,
 - 재기재 자체로 위법하진 않아 정비대상에선 제외되었으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므로 지자체 자율 검토 후 정비계획 수립함
 - 과태료 부과 기한, 과태료 납부기한 추가 통지 등 규제법 등에 반하지 않는 규정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확정·정비

법 규 명	내 용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준용규정)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고, 준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9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영업주의 사망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10월5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8. 10. 5. ~ 2018. 10. 19.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비고
1	일반음식점	등록 14	인천식당	황○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11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32-453-2638)
 - 청문일시 : 2018. 11. 2.(금)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식품안전팀 032-453-26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08호

2017회계연도 결산 고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9.20)에서 의결, 확정된 2017회계연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	㉢/㉡	세출㉣	㉤/㉣	결산상잉여금 ㉥=(㉡-㉣)	㉦/㉥	현년도 채무상환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768,560,345,580	782,238,698,348	102 %	611,104,284,963	80 %	171,134,413,385	22 %		171,134,413,385 (2,000,000,000)	38,787,870,060	7,471,274,090	17,319,245,590 (2,000,000,000)	4,743,246,175	102,812,777,470
일 반 회 계		722,055,998,560	735,520,906,344	102 %	601,483,938,501	83 %	134,036,967,843	19 %		134,036,967,843 (2,000,000,000)	35,349,210,640	7,406,642,110	13,346,140,610 (2,000,000,000)	4,728,850,035	73,206,124,448
특 별 회 계		46,504,347,020	46,717,792,004	100 %	9,620,346,462	21 %	37,097,445,542	80 %		37,097,445,542	3,438,659,420	64,631,980	3,973,104,980	14,396,140	29,606,653,022
	기타특별회계	46,504,347,020	46,717,792,004	100 %	9,620,346,462	21 %	37,097,445,542	80 %		37,097,445,542	3,438,659,420	64,631,980	3,973,104,980	14,396,140	29,606,653,022
	소외노후구 역도시개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 리특별회계	11,258,558,000	11,258,558,180	100 %	929,483,240	8 %	10,329,074,940	92 %		10,329,074,940		64,631,980			10,264,442,960
	폐기물처 리시설설 치특별회 계	10,502,032,000	10,435,924,953	99 %			10,435,924,953	99 %		10,435,924,953					10,435,924,953
	발전소주 변지역지 원사업특 별회계	14,121,000	14,267,954	101 %	13,638,654	97 %	629,300	4 %		629,300				482,320	146,980
	의료급여 기금특별 회계	1,173,987,000	1,182,634,631	101 %	1,027,909,098	88 %	154,725,533	13 %		154,725,533				13,913,820	140,811,713
	지하수관 리특별회 계	290,213,000	259,100,500	89 %	59,842,630	21 %	199,257,870	69 %		199,257,870					199,257,870
	기반시설 특별회계	53,163,000	53,163,497	100 %			53,163,497	100 %		53,163,497					53,163,497
	주차장특 별회계	23,212,273,020	23,514,142,289	101 %	7,589,472,840	33 %	15,924,669,449	69 %		15,924,669,449	3,438,659,420		3,973,104,980		8,512,905,049

- ※ 1. 현년도 채무상환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하여야 함
 2.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1) 세입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 결정액㉔	수납액			미수납액 ㉕=㉓-㉔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㉓	③/㉔
합 계	730,562,239,000	37,998,106,580	768,560,345,580	853,990,783,276	783,539,399,260	1,300,700,912	782,238,698,348	71,152,084,928	3,792,145,848	67,359,939,080	101.8 %	91.7 %
일 반 회 계	692,247,084,000	29,808,914,560	722,055,998,560	778,036,853,192	736,816,958,546	1,296,052,202	735,520,906,344	42,515,946,848	2,828,611,348	39,687,335,500	101.9 %	94.5 %
지방세수입	117,093,437,000		117,093,437,000	128,915,315,200	121,429,691,170	587,616,080	120,842,075,090	8,073,240,110	455,434,310	7,617,805,800	103.2 %	93.7 %
보통세	114,893,437,000		114,893,437,000	121,927,527,310	118,825,129,360	156,285,480	118,668,843,880	3,258,683,430	344,500	3,258,338,930	103.3 %	97.3 %
지난년도수입	2,200,000,000		2,200,000,000	6,987,787,890	2,604,561,810	431,330,600	2,173,231,210	4,814,556,680	455,089,810	4,359,466,870	98.8 %	31.1 %
세외수입	52,609,878,000		52,609,878,000	89,077,526,797	54,927,674,801	292,854,742	54,634,820,059	34,442,706,738	2,373,177,038	32,069,529,700	103.8 %	61.3 %
경상적세외수입	37,238,563,000		37,238,563,000	38,376,237,279	38,206,816,189	17,689,585	38,189,126,604	187,110,675		187,110,675	102.6 %	99.5 %
임시적세외수입	15,371,315,000		15,371,315,000	50,701,289,518	16,720,858,612	275,165,157	16,445,693,455	34,255,596,063	2,373,177,038	31,882,419,025	107.0 %	32.4 %
지방교부세	11,595,386,000		11,595,386,000	12,924,330,680	12,924,330,680		12,924,330,680				111.5 %	100.0 %
지방교부세	11,595,386,000		11,595,386,000	12,924,330,680	12,924,330,680		12,924,330,680				111.5 %	100.0 %
조정교부금등	78,282,927,000		78,282,927,000	83,387,661,000	83,387,661,000		83,387,661,000				106.5 %	100.0 %
자치구조조정교부금등	78,282,927,000		78,282,927,000	83,387,661,000	83,387,661,000		83,387,661,000				106.5 %	100.0 %
보조금	340,848,349,000		340,848,349,000	341,105,997,180	341,521,578,560	415,581,380	341,105,997,180				100.1 %	100.0 %
국고보조금등	243,775,384,000		243,775,384,000	244,054,883,860	244,341,492,860	286,609,000	244,054,883,860				100.1 %	100.0 %
시·도비보조금등	97,072,965,000		97,072,965,000	97,051,113,320	97,180,085,700	128,972,380	97,051,113,320				100.0 %	1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817,107,000	29,808,914,560	121,626,021,560	122,626,022,335	122,626,022,335		122,626,022,335				100.8 %	100.0 %
보전수입등	91,812,256,000	29,808,914,560	121,621,170,560	122,621,171,975	122,621,171,975		122,621,171,975				100.8 %	100.0 %
내부거래	4,851,000		4,851,000	4,850,360	4,850,360		4,850,360				100.0 %	100.0 %
특 별 회 계	38,315,155,000	8,189,192,020	46,504,347,020	75,353,930,084	46,722,440,714	4,648,710	46,717,792,004	28,636,138,080	963,534,500	27,672,603,580	100.5 %	62.0 %
기타특별회계	38,315,155,000	8,189,192,020	46,504,347,020	75,353,930,084	46,722,440,714	4,648,710	46,717,792,004	28,636,138,080	963,534,500	27,672,603,580	100.5 %	62.0 %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 구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1,258,558,000		11,258,558,000	11,258,558,180	11,258,558,180		11,258,558,180				100.0 %	100.0 %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502,032,000		10,502,032,000	10,435,924,953	10,435,924,953		10,435,924,953				99.4 %	100.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 회계	14,121,000		14,121,000	14,267,954	14,267,954		14,267,954				101.0 %	100.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73,987,000		1,173,987,000	21,215,360,661	1,182,634,631		1,182,634,631	20,032,726,030	73,184,100	19,959,541,930	100.7 %	5.6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40,213,000	50,000,000	290,213,000	284,274,760	259,100,500		259,100,500	25,174,260		25,174,260	89.3 %	91.1 %
기반시설특별회계	53,163,000		53,163,000	53,163,497	53,163,497		53,163,497				100.0 %	100.0 %
주차장특별회계	15,073,081,000	8,139,192,020	23,212,273,020	32,092,380,079	23,518,790,999	4,648,710	23,514,142,289	8,578,237,790	890,350,400	7,687,887,390	101.3 %	73.3 %

(2)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730,562,239,000	37,998,106,580	768,560,345,580	625,827,054,443	611,104,284,963	65,578,389,740 (2,000,000,000)	38,787,870,060	7,471,274,090	19,319,245,590 (2,000,000,000)	91,877,670,877
일 반 회 계	692,247,084,000	29,808,914,560	722,055,998,560	615,017,994,301	601,483,938,501	58,101,993,360 (2,000,000,000)	35,349,210,640	7,406,642,110	15,346,140,610 (2,000,000,000)	62,470,066,699
일반공공행정	52,797,002,000	501,790,000	53,298,792,000	43,644,875,340	41,741,099,200	9,330,640,250	1,419,014,700	305,283,250	7,606,342,300	2,227,052,550
공공질서및안전	9,111,634,000	1,384,228,040	10,495,862,040	7,427,635,920	7,167,077,170	2,803,689,910	2,553,689,910		250,000,000	525,094,960
교육	9,164,393,000		9,164,393,000	9,130,737,190	9,130,737,190					33,655,810
문화및관광	12,342,009,000	3,918,485,000	16,260,494,000	11,193,525,701	9,959,915,981	4,759,297,900	2,687,448,000	1,815,849,900	256,000,000	1,541,280,119
환경보호	23,287,910,000	302,554,660	23,590,464,660	20,172,651,990	19,746,908,750	1,307,947,220	1,307,947,220			2,535,608,690
사회복지	357,992,720,000	19,984,000	358,012,704,000	354,083,914,178	354,005,072,638	212,736,000	211,744,000	992,000		3,794,895,362
보건	20,550,389,000	191,920,000	20,742,309,000	18,074,985,770	18,074,985,770	1,223,648,000	1,223,648,000			1,443,675,230
농림해양수산	2,794,416,000	16,385,000	2,810,801,000	2,514,063,062	2,514,063,062	113,915,640	113,915,640			182,822,298
산업·중소기업	3,205,640,000	109,540,000	3,315,180,000	3,136,085,123	3,136,085,123					179,094,877
수송및교통	14,776,132,000	11,823,202,150	26,599,334,150	20,714,211,640	17,168,422,860	7,838,636,850	3,477,631,630	4,361,005,220		1,592,274,440
국토및지역개발	58,526,770,000	12,682,173,710	71,208,943,710	44,428,687,649	38,342,950,019	30,511,481,590 (2,000,000,000)	22,354,171,540	923,511,740	7,233,798,310 (2,000,000,000)	2,354,512,101
예비비	43,159,346,000	△1,141,348,000	42,017,998,000							42,017,998,000

	기타	84,538,723,000		84,538,723,000	80,496,620,738	80,496,620,738					4,042,102,262
	특 별 회 계	38,315,155,000	8,189,192,020	46,504,347,020	10,809,060,142	9,620,346,462	7,476,396,380	3,438,659,420	64,631,980	3,973,104,980	29,407,604,178
	기타특별회계	38,315,155,000	8,189,192,020	46,504,347,020	10,809,060,142	9,620,346,462	7,476,396,380	3,438,659,420	64,631,980	3,973,104,980	29,407,604,178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 구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1,258,558,000		11,258,558,000	994,115,220	929,483,240	64,631,980		64,631,980		10,264,442,78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0,502,032,000		10,502,032,000							10,502,032,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 회계	14,121,000		14,121,000	13,638,654	13,638,654					482,34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73,987,000		1,173,987,000	1,027,909,098	1,027,909,098					146,077,90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40,213,000	50,000,000	290,213,000	59,842,630	59,842,630					230,370,370
	기반시설특별회계	53,163,000		53,163,000							53,163,000
	주차장특별회계	15,073,081,000	8,139,192,020	23,212,273,020	8,713,554,540	7,589,472,840	7,411,764,400	3,438,659,420		3,973,104,980	8,211,035,78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09호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의12 제4항에 따라 직권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0월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14-11(1층, 201, 202, 301, 302, 401, 402)외 44건

번호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구분	부여구분
별 도 열 램(4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공적장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하였습니다.

주소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개별호수판갯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14-11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4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14-14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4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22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4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22-6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4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22-12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24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4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30-6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4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4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4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5-9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5-12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303호 401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87번길 15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4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2-5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2-13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2-17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3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3-1 (논현동)	101호,102호,103호 201호,202호 301호,302호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6-1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3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7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3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1-1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3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2 (논현동)	101호 201호 301호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3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4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 301호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4-3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 301호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4-9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39-16 (논현동)	1층 201호,202호 301호 401호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39-17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 301호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39-18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 301호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39-20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 301호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39-21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3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4-10 (논현동)	101호,102호,103호 201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5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5-1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302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7-1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203호 301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8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19 (논현동)	101호,102호,103호 201호,202호 301호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20-1 (논현동)	101호,102호,103호 201호,202호 301호,302호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21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28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30 (논현동)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56 (논현동)	101호,102호,103호 201호,202호 301호,302호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7-6 (서창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15-2 (서창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15-6 (서창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15-14 (서창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15-17 (서창동)	1층 201호,202호 301호,302호 401호	5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10호

상인천초교주변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06.01.)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1-25호(2011.04.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1-78호(2011.09.23.)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대 “상인천초교주변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재개발 정비사업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 정비구역	남동구 간석1동 311-1번지 일원	137,841.9	-	137,841.9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841.9	-	137,841.9	100.0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21	구월녹지 (공원)동측	일 반 미관지구	대3-13	12,000	800	편측15	인고 제109호 (1999.9.9)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3	8~13	국지도로	195 (157)	중3-47	소2-9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86	8~17	국지도로	42	소1-15	간석동 452-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51	6~17	국지도로	25	소1-15	간석동 455-9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3	151	8~17	국지도로	25	소1-15	간석동 455-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53	6~16	국지도로	39	소1-16	간석동 336-15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390	20	국지도로	140 (140)	대3-13	간석동 426-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419	12	국지도로	377 (377)	소3-138	소1-1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9	10~12	국지도로	50 (26)	대1-1	중3-419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1	9	10~11	국지도로	50 (26)	대1-1	중3-419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	13	25~30	보조간선	3,150 (203)	대1-14 간석동	대2-7 문학동	일반도로	-	인고 제1063호 (1987. 1. 8)	주요폭원: 25m
기정	소로	1	11	10~12	국지도로	145 (101)	대3-13	간석동 427-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423	간석동 419-11	대2-3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61	간석동 339-5	소1-16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1	23	8	국지도로	61	간석동 339-5	소1-1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76	8~12	국지도로	85 (59)	소1-11	중1-39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92	8~12	국지도로	329 (274)	대1-2	소3-15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37	6	국지도로	49 (15)	대1-1	중3-41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38	6	국지도로	60	대3-13	중3-41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40	6	국지도로	34 (4)	중3-47	중3-41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54	6~12	국지도로	139 (32)	소2-84	소1-16	일반도로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조서 참조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3-151	·폭원 변경 : 6~17m → 8~17m	·오기로 인한 정정
-	소로1-9	·폭원 변경 : 10~12m → 10~11m	·오기로 인한 정정
-	소로1-23	·폭원 변경 : 10m → 8m	·오기로 인한 정정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①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2,069.8	감)454.2	1,615.6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귀속
기 정	②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1,393.8	-	1,393.8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주차장	·면적 축소 :2,069.8㎡→1,615.6㎡(감 454.2㎡)	· 유치원 부지의 위치이동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공 원	근린공원	남동구 간석동 335-2번지 일원	23,929.6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변 경	①	공 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간석동 438-1번지 일원	4,413.5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기 정	①	공 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320-7번지 일원	3,185.9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 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원	어린이공원	·형태 변경	· 유치원 부지의 위치이동에 따른 형태 변경

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공공공지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495.4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귀속
기 정	②	공공공지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509.0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무상귀속

5)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1,505.7	인고 제2009-168호 (2009.06.01)	부지만 무상귀속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기 정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 정비구역	137,841.9㎡	남동구 간석1동 311-1번지 일원	528	2	-	526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기정	상인천 초교주변 재개발 정비구역	137,841.9	획지1-1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1,505.7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40m 이하
			획지2-1 (주차장)	2,069.8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40m 이하
			획지4-2 (유치원)	454.2	아동관련 시설(유치원)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획지4-3 (공동주택)	88,399.5	공동주택 부대복지시설	15% 이하	250% 이하	121m 이하
			획지4-5 (유치원)	737.2	아동관련 시설(유치원)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획지4-6 (주차장)	1,393.8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40m 이하
			획지5-2 (종교시설)	392.0	종교집회장 (교회)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획지5-4 (근린생활시설)	348.4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300% 이하	40m 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1	지정용도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1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4-2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유치원)			
				허용용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 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구 분		계 획 내 용		
	명 칭	면적(㎡)					
기정	상인천 초교주변 재개발 정비구역	137,841.9	획지4-3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 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5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 설(유치원)		
				허용용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6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5-2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5-4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제2종 근 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총 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폭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4-2	도로변	폭1.5m 지정	
				획지4-3	도로변	폭6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폭3m 지정	
			획지4-5	도로변	폭1.5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주택 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69.55% + 공공 이용시설확보 1.72% + 지하주차장계획 10% + 탑상형 아파트건립 5% = 296.27% (계획용적률 250%이하) ·공원 일조권 완화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으로 인 한 일조권 완화에 관한 사항에 해당없음				

※ 획지2-1, 4-6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3-1, 4-1, 4-4의 공원과 획지5-1, 5-3의 공공공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률에
따름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 용 도	건폐율	용적률	1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변경	상인천 초교주변 재개발 정비구역	137,841.9	획지1-1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1,505.7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300% 이하	40m 이하
			획지2-1 (주차장)	1,615.6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40m 이하
			획지2-2 (유치원)	454.2	아동관련 시설(유치원)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획지4-2 (공동주택)	88,853.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6% 이하	275% 미만	121m 이하
			획지4-4 (유치원)	737.2	아동관련 시설(유치원)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획지4-5 (주차장)	1,393.8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40m 이하
			획지5-2 (종교시설)	392.0	종교집회장 (교회)	50% 이하	300% 이하	20m 이하
			획지5-4 (근린생활시설)	348.4	근린생활시설	50% 이하	300% 이하	40m 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1-1	지정용도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1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2-2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유치원)			
				허용용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 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구 분		계 획 내 용		
	명 칭	면적(㎡)					
변경	상인천 초교주변 재개발 정비구역	137,841.9	획지4-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 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4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 설(유치원)		
				허용용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4-5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5-2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5-4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제2종 근 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폭3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획지2-2	도로변	폭1.5m 지정	
				획지4-2	도로변	폭6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폭3m 지정	
			획지4-4	도로변	폭1.5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주택 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4.0% + 지하 주차장계획 10% = 294.0% (계획용적률 275%미만)				

※ 획지2-1, 4-5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3-1, 4-1, 4-3의 공원과 획지5-1, 5-3의 공공공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률에
따름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환경성예측	저감방안
자연환경	기상·기후 및 에너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mm,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전력사용 예측: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용에 따른 에너지 및 도시가스 사용 ·포장화에 따른 열섬효과 증가예상 ·건축물 설치에 따른 일조상의 저해현상 발생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으로 교통·수송시설의 연료사용량 최소화
	지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절·성도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 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 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경관	·공사 시 일시적인 경관 악영향 발생 ·운영 시 경관변화 발생	·조화로운 건축물 계획 등으로 경관영향 최소화
생활환경	대기질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론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 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수질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탐 부하 증가 예상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용수사용 및 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공사 시 별도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계획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탐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운영 시 급수소요량은 2009년 완공되는 만월산배수지를 통해 공급, 발생하수량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전량 처리할 예정
	폐기물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 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소음·진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 예상 ·운영 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 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 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고려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 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 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론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상인천초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유색포장 및 미끄럼방지 시설, 험프,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 설치 계획 수립		

아. 세입자 주거대책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법 제52조제1항제3호 관련) 조합 정관 제36조에 의하여 조합은
 -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인천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한다.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법 제52조제1항제4호 관련)

세입자 총가구 수	임대주택 공급신청 가구수	대 책 별 현 황 (단위: 가구수)						비 고
		임대주 택공 급	주거이전비 지급 (상가포함)	무 대 책 (유형별)				
				계	위장 세입자	상가 세입자	주거기간미달 (임대/이전비신청)	
603	68	63	603	0	-	-	-	

- 영업손실보상 등을 위하여 상가면적 평당 기준 추정 손실보상비 책정
- 주거이전비를 원하는 세대와 세대원의 수 등에 한하여 지급 예정

자.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1	1,505.7	1-1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1,505.7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2	2,069.8	2-1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2,069.8	노외주차장
	3	3,185.9	3-1	남동구 간석동 320-7번지 일원	3,185.9	소공원
	4	119,327.8	4-1	남동구 간석동 436-2번지 일원	4,413.5	어린이공원
			4-2	남동구 간석동 436-11번지 일원	454.2	아동관련시설(유치원)
			4-3	남동구 간석동 331-1번지 일원	88,399.5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4-4	남동구 간석동 335-2번지 일원	23,929.6	근린공원
			4-5	남동구 간석동 339-3번지 일원	737.2	아동관련시설(유치원)
			4-6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1,393.8	노외주차장
	5	1,744.8	5-1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495.4	공공공지
			5-2	남동구 간석동 303-1번지 일원	392.0	종교집회장(교회)(존치)
			5-3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509.0	공공공지
			5-4	남동구 간석동 302-1번지 일원	348.4	근린생활시설
변경	1	1,505.7	1-1	남동구 간석동 435-1번지 일원	1,505.7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2	2,069.8	2-1	남동구 간석동 433-2번지 일원	1,615.6	노외주차장
			2-2	남동구 간석동 433-7번지 일원	454.2	아동관련시설(유치원)
	3	3,185.9	3-1	남동구 간석동 320-7번지 일원	3,185.9	소공원
	4	119,327.8	4-1	남동구 간석동 438-1번지 일원	4,413.5	어린이공원
			4-2	남동구 간석동 331-1번지 일원	88,853.7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4-3	남동구 간석동 335-2번지 일원	23,929.6	근린공원
			4-4	남동구 간석동 339-3번지 일원	737.2	아동관련시설(유치원)
			4-5	남동구 간석동 336-13번지 일원	1,393.8	노외주차장
	5	1,744.8	5-1	남동구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495.4	공공공지
			5-2	남동구 간석동 303-1번지 일원	392.0	종교집회장(교회)(존치)
			5-3	남동구 간석동 302-2번지 일원	509.0	공공공지
			5-4	남동구 간석동 302-1번지 일원	348.4	근린생활시설

※ 도로는 별도의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차.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카.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해당 없음

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6)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파.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경관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40주	정비구역 내 기존 수목 : 40주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하.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 대상지 내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대로3-13, 중로1-390, 중로3-419, 소로1-11, 소로1-13, 소로1-9, 소로2-78, 소로2-92, 소로3-137, 소로3-138, 소로3-140호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젓은 세가로 접속 및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2) 대지내 공지 계획

○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획지1-1)의 대지 안의 공지 부분을 보도형 전면공지로 지정하여 공공을 위한 보행공간으로 사용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획지1-1(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대지 안의 공지(도로변 폭3m)	·보도형 전면공지 지정 -공공을 위한 보행공간으로 사용	

3) 보행축 확보에 관한 계획

- 남북간 보행자 통행축을 확보하여 단지계획 수립

4) 시행자부담에 관한 계획

- 상인천초등학교 부지와 상인천초교주변구역의 단차로 인한 학교 경계부의 옹벽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함

5)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2009. 1. 13)’ 상의 순부담 요건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거. 관련서류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11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9월1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0번길 30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0번길 30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178 ,18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0번 길	30	2009. 11.16	구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10..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50번길 30 기초구간에위치하여30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27번 길	9-1	2009. 11.16	만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10.0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27번길 9-1 기초구간에위치하여9-1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17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0번길	30	2018.10.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18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0번길	32	2018.10.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27번길	7	2018.10.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